

운 영 규 정 개 요

1 시설기본정보

기관명	이삭방문요양센터	전화번호	041-669-5339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팩스번호	041-669-5340
재가급여 종류	방문요양	설치일자	2019. 8. 28.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인정받은 자		

2 직원 근무체계

총원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7	1	1	15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이용시작일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서비스 제공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상호관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계약해제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일반	15%
보험료액이 국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 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9%
보험료액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6%
기초생활수급자	0%

●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방문시간	급여비용	방문시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5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 책임)

-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에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 범위)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
-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고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 수급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불만 및 고충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 기록 및 보고 → 조치 → 고충처리 결과 통보 및 완료

8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규정, 복리후생, 안전관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